논산을 새롭게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	제76호

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미래전략실장
제출연월일	2023. 5. 16.

예산실장 심사필

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76호

제출연월일 : 2023. 5. 16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제안설명자 : 미래전략실장

1. 제안이유

조례 제정 후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기구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 전무한 상태로 실효성 및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며, 타 조례 및 규정 등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과 역할(기능)이 유사·중복되어 비효율성이 증대되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2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3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3. 4. 6. ~ 4. 26. (20일간)

나) 예고결과 : 별도 의견없음

5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6) 충청남도소관실과 : 충청남도 정책기획관(☎041-635-2113)

□ 폐지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안자	미래전략실장	박 찬 택
	정책개발팀장	최 재 룡
	담 당 자	이 건 택 (746-5032)

참고 1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안, 자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책자문위원회 설치)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소속으로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시의 비전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
2. 시의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
3. 시의 중·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
4. 시장이 요구하는 주요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시민만족도 조사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분과별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다만, 금품·향응수수, 불법로비, 배임·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.

1. 대학교,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
2. 회계사,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군 관련 전직 및 현직 인사.
4. 전·현직 학계, 법조계,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
5. 여성지도자, 주민대표, 직능단체장 등 지역에서 덕망 있고 대표성이 있는 자
6.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

④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.

제5조(회의 등)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.
2.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 한다.

제6조(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시장이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

2. 장기간의 심신허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3.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8조(분과위원회)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시정혁신분과 : 행정, 거버넌스, 성과관리 등

2. 교육사회분과 : 교육, 복지, 보건 등

3. 문화·관광분과 : 문화, 관광마케팅·개발, 예술 등

4. 경제성과분과 : 경제, 경영, 산업, 농·축경제 등

5. 도시발전분과 : 도시, 건축, 건설, 환경 등

6. 국방혁신분과 : 국방혁신도시, 국방산업단지, 군 관련 정책 등

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총원에서 각 분과별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제9조(특별위원회)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정의 특별한 사안 및 둘 이상 분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언·자문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에 따른 위원 중 13명 이내로 구성한다. 다만,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 등이 요구되는 경우 위원회의

의결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를 준용한다.

제10조(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.

제11조(간사 및 서기)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.

1. 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각각 정책개발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의 장과 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.

2.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와 서기는 별표 1과 같다.

3. 특별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관련 담당공무원 중 지명한다.

제12조(자료협조) 시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4조(비밀엄수의 임무)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수당 등) 위원회 운영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(제77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조례 제952호, 2015.6.22. 다른조례의 개정<논산시 리.통.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>)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②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문화예술과장”으로, “경제지원과장”을 “사회적경제과장”으로, “건설과장”을 “희망마을건설과장”으로, “복지행정담당”을 “복지정책담당”으로 “지역경제담당”을 ‘사회적경제담당“으로 ”건설행정담당“을 건설정책담당”으로 한다.

부칙(조례 제1198호, 2018.9.20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조례 제1451호, 2020.12.28. 다른 조례의 개정<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>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⑫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“사회적경제과장”을 “뉴딜경제과장”으로, “도시재생과장”을 “도시친화재생과장”으로,“사회적경제담당”을‥경제정책담당‥으로 한다.

부칙(조례 제1469호, 2021.3.23. 다른 조례의 개정<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>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“문화예술과장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생략

참고 2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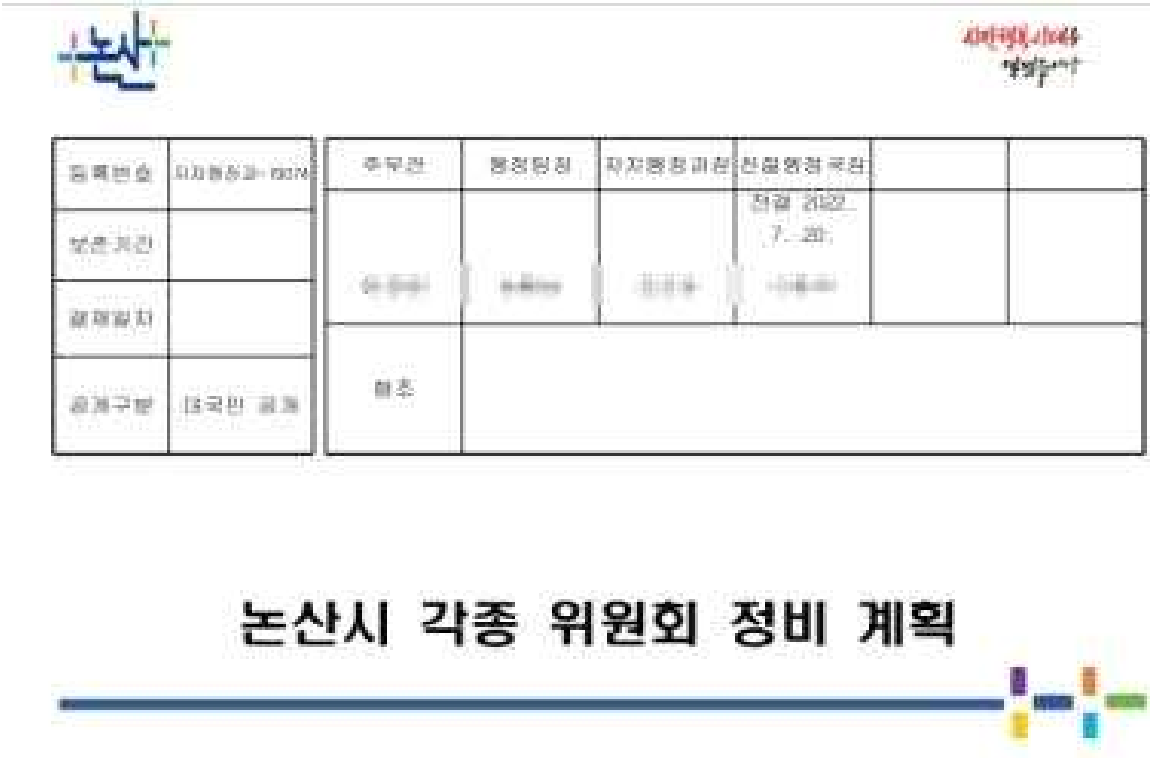

등록번호	자치행정과-[illegible]
보존기간	
결재일자	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

주무관	행정팀장	자치행정과장	전결행정국장		
[illegible]	[illegible]	[illegible]	전결 2022. 7. 20. [illegible]		
협조					

논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

논 산 시

[자치행정과]

논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

◇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·효율성 제고

Ⅰ 현황 및 문제점

□ 현 황

○ **(위원회 수)** '22.6월 기준 121개로, 매년 지속적 증가*

* 106개('18년) → 111개('19년) → 119개('20년) → 118개('21년) → 121개('22.6.30.)

○ **(설치근거)** 법령 66.1%(의무설치 55.9%, 임의 10.2%), 조례 31.4%, 기타 0.8%)

○ **(기타)**

- 위원 수 : 총 1,906명(위원회별 평균 16.1명)
- 위원회 운영경비 : 약 97,631천원(위원회별 평균 827천원)

□ 문제점

○ **(운영실적 저조)**

-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수의 24.1%(32개)
- 최근 3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16.9%(20개)

○ **(유사·중복)** 유사·중복기능 수행 위원회 다수 존재, 비효율 증대

【 위원회 통폐합 :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】

(위원회 통·폐합) 중앙부처·지방자치단체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일괄정비

- 위원회 운영실태 원점 재검토, **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·폐합**하고, 위원회 활동 실태 및 정비 실적은 대국민 공개 추진

Ⅱ 위원회 정비 방안

< 기본 방향 >

<table>
<tr><th colspan="3">정비 대상</th><th></th><th>정비 방안</th></tr>
<tr><td rowspan="4">법령상
임의위원회 /
조례상
위원회</td><td colspan="2">신설 위원회</td><td></td><td>신설 최대한 억제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미개최위원회</td><td>· 3년간 미개최</td><td>⇨</td><td>폐지</td></tr>
<tr><td>· 1년간 미개최</td><td>⇨</td><td>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비효율위원회
* 연 3회 미만 개최, 구성·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</td><td>· 기능 유사·중복</td><td>⇨</td><td>통·폐합</td></tr>
<tr><td>· 기능 독립</td><td>⇨</td><td>(목적달성) 폐지
(한시필요) 존속기한 설정
(내부안건) 협의체 전환
(존속필요·안건少) 비상설화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
(행안부→해당부처, 법령정비 요청)</td><td>· 미개최
· 비효율</td><td>⇨</td><td>(사전) 사전협의제도 활성화
(사후)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</td></tr>
</table>

1. 미개최 위원회

□ **3년간**('19~'21년간) **미개최**

○ (정비방안) 자체적 폐지

○ (절차) 해당부서에서 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개정 또는 폐지

- 이하 내용 생략 -